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729466		
등록번호	110111-7294666		
상 호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와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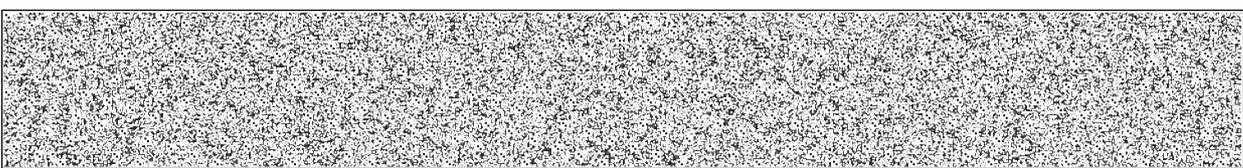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 주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60,000 주 60,000 주	금 300,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10,000 주 110,000 주	2020.01.16 변경 2020.01.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200,000 주 200,000 주	2020.02.07 변경 2020.02.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1,175,000 주 250,000 주 50,000 주 875,000 주	금 5,875,000,000 원 2020.02.28 변경 2020.02.28 등기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2. 부동산의 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18050203440104002310002200626140962879111Y1H0S1H1 1 발행일:2020/03/04 발급확인번호 4662-AAUB-CWMQ



등기번호	729466
------	--------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박영희 750103-*****
대표이사 박영희 750103-*****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 329동 1901호(원문동, 래미안슈르)
기타비상무이사 김연희 801218-*****
기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
감사 김영무 71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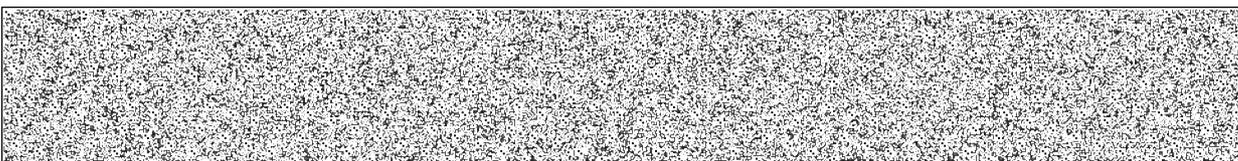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종류주식

- ①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회사는 제1종 종류주식을 [오백만]([5,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1.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8%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 2.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0.3%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3.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③어느 사업연도에 어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 ④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 1.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 2.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 3.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 4.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30%는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 ⑤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2020년 02월 28일 설정 2020년 02월 28일 등기

제2종종류주식

- ①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을 [오백만]([5,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1.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8%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 2.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



등기번호	729466
------	--------

의 발행가액에 연 0.3%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3.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③ 어느 사업연도에 어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④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3.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4.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30%는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0년 02월 28일 설정 2020년 02월 28일 등기

기 타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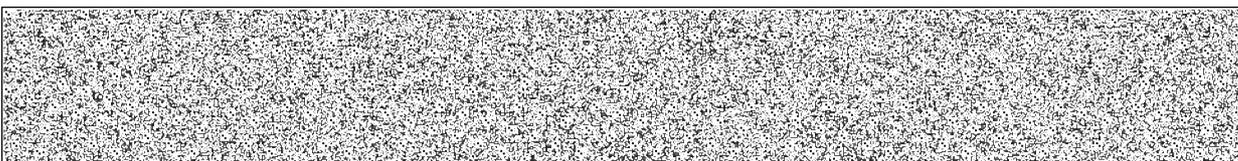
~~1. 주식의 양도
회사의 모든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020년 01월 13일 말소 2020년 01월 16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2020년 01월 16일 설치 2020년 01월 20일 등기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 영업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6.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7. 회사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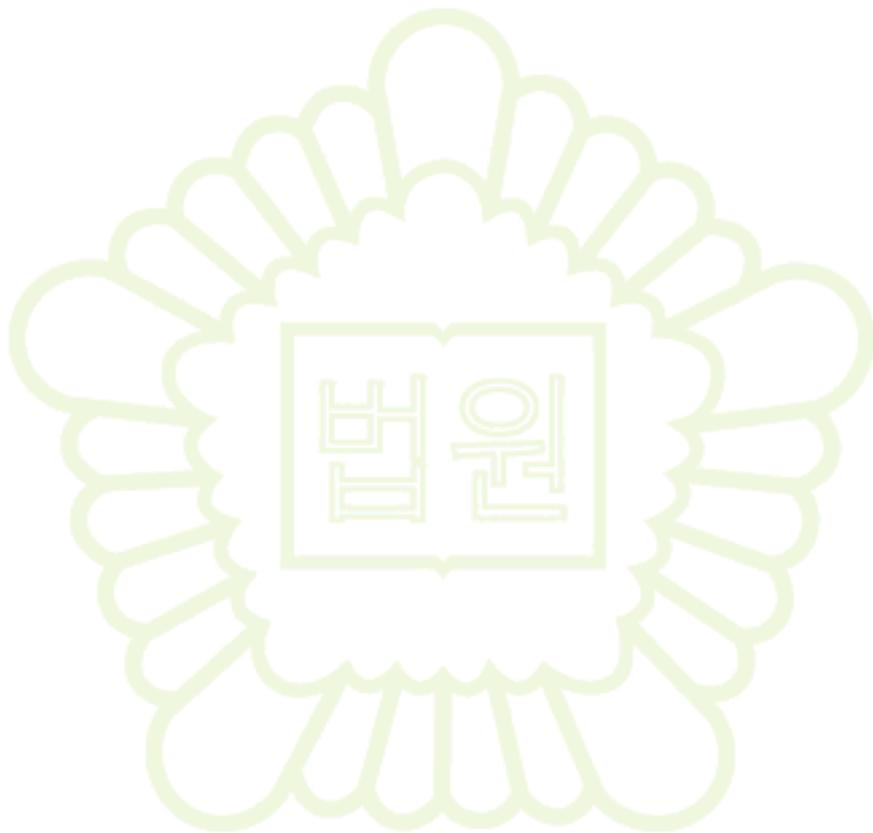
회사성립연월일 2019년 11월 15일



등기번호	729466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9년 11월 15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0년 03월 04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4662-AAUB-CWMQ

118050203440104002310002200626140962879111Y1H0S1H1 1 발행일:2020/03/04

- 4/4 -

